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

의 안 번 호	359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0월 17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코로나-19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기 침체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서울시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 산업(인공지능·바이오·로봇 등) 육성을 위해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·소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할 벤처펀드를 조성·운영하고자 함
- 나. 이에 202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기금예산에 펀드 조성을 위한 기금 출자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근거

-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제1항 제1호
-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(기금의투자) 제4항
-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(기금의 용도)

나. 추진방향

- 공익성(기업성장 지원)과 수익성(적정 수익률)의 조화
- 정부자금(모태펀드) 및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·효율적인 운용
- 자금을 적시 공급하고 회수자금을 원활히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

다. 출자대상 : 벤처투자조합, 모태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라. 출자재원 :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

마. 출자의 필요성

- 미래혁신성장펀드('19년~'22년/4개년)조성 및 운영을 통하여 미래 신산업 분야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기업성장을 통한 市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확인하였으며, '23년에도 지속적인 펀드 출자를 통해 서울시 유망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

[참고-미래혁신성장펀드 서울소재 투자기업 성과] ('21년 기준)

(매 출 액) 2조 1,795억원 → '19년(8,893억원) 대비 247% 증가
(고용인원) 1만 5,631명 → '19년(5,398명) 대비 289% 증가
(투자유치) 2조 5천억원 → '19년(7,868억원) 대비 320% 증가

-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사업이 2022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서울 Vision 2030펀드('23년~'26년)를 신규 조성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며, 향후 서울시 경제성장의 정책적 효과를 지속 강화하고자 함

3. 서울 Vision 2030펀드 및 미래혁신성장펀드 출자 계획

가. 추진방향

- 정부 정책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
 - 정부출자기관(모태펀드 등)과 민간출자를 확보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
- “투자 → 회수 → 재투자”를 통한 재원 조성의 선순환구조 확립
 - 투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회수전략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
- 미래 투자수요 보완 및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펀드 재구조화
 -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혁신기술 분야 펀드 신규 조성
 - 市 정책 사업 및 투자 소외기업을 위한 전략 투자 추진

나. '23년 펀드 출자 계획

- 출자규모 : 520억원(서울Vision2030펀드+미래혁신성장펀드)

	투자대상	내 용	출자액
서울 Vision 2030 펀드 2023년 ~ 2026년	①스케일업펀드	- 글로벌 창업생태계 Top5 구현을 위한 대규모 후속투자 목적의 스케일업(Scale-up) 펀드 조성	80억
	②첫걸음동행펀드	- 서울시 정책사업(R&D지원사업, 서울Vision2030 등) 연계 및 민간시장 투자 소외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	30억
	③디지털대전환펀드	- 미래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혁신기술기업 (ICT, AI, 빅데이터, 6G 등)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	30억
	④창업지원펀드	-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초기창업 분야 투자 강화 및 선배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펀드 조성	120억
	⑤서울바이오펀드	-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이오/의료/헬스케어 등 미래 바이오 분야 유망기업에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	75억
	⑥문화콘텐츠펀드	- K-콘텐츠 강국을 선도할 서울시 유망 문화콘텐츠 산업분야의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	60억

※'23년도 총 출자규모에는 기 조성된 미래혁신성장펀드 중 서울Vision2030펀드에

이어지지 않는 3개 펀드*에 대한 잔여분(125억)에 대한 출자금이 포함됨

*3개 펀드 : 4차산업혁명펀드, 스마트시티펀드, 재도전지원펀드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제1항 제1호

제62조의17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

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벤처투자조합
2. 모태조합
3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금예산편성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경제정책과 산학협력팀 한용호 (☎2133-5224)